

의안 번호	2492	[울산광역시 중구 골목문화 기록·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]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

1. 검토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. 11. 7.(금) 김태욱 의원의 9명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5. 11. 7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5. 12. 4.(목)

2. 제안이유

- 울산광역시 중구의 일상생활과 역사·문화가 축적된 골목공간을 체계적으로 기록·보존하고 관광·문화·교육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의 정체성 회복과 골목문화의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라. 기록 및 재생사업의 추진, 교육 및 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 6조)
- 마. 골목문화 재생 시범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바. 주민참여 및 민간 협력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사. 골목문화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- 아.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
4. 근거법규

가. 「문화기본법」 제5조

나.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4조

다.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

5. 검토 사항

(1) 제정배경

- 전국 최초 제정하는 조례로서 울산광역시 중구의 일상생활과 역사·문화가 축적된 골목공간을 체계적으로 기록·보존하고 관광·문화·교육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의 정체성 회복과 골목문화의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.

(2) 내용검토

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
-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
-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설명함.

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
- 골목문화의 기록 및 재생, 문화·관광·교육자원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수립 및 행·재정적 지원함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함.

다. 기본계획의 수립(안 제4조)

- 골목문화 기록 및 재생, 자원 활용을 위한 계획 수립과 계획 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5가지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.

라. 기록 및 재생사업의 추진(안 제5조)

- 기록 및 재생사업의 추진에 관한 3가지 사항과 골목문화 재생사업 시행에 관한 3가지 사항을 규정함.

마. 골목문화 재생 시범구역 지정 및 운영(안 제7조)

- 시범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, 주민참여형 사업의 3가지 사업 명시함.

바. 주민참여 및 민간협력(안 제8조)

- 골목문화 기록 및 재생사업 전반에 주민 참여 보장과 민간 전문가 등 협력으로 사업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근거 마련함.
- 주민참여 기반 조성을 위한 주민 교육 시행 방법 명시함.

사. 골목문화 자문단 구성 및 운영(안 제9조)

- 효과적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 근거 마련하고, 3가지 자문 내용 규정함.

아. 재정 지원(안 제10조)

- 골목문화 기록 및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를 규정함.

6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중구의 일상생활과 역사·문화가 축적된 골목 공간을 체계적으로 기록·보존하고 관광·문화·교육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임.
- 상위법령인 「문화기본법」 제5조에 ‘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,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문화 절차의 해소를 통해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’ 라고 되어 있으며,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4조의2항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’ 라고 되어 있어 상위 법령에 부합함.
- 골목 문화의 기록 및 재생사업의 추진, 교육 및 관광 프로그램 운영, 골목문화 재생 시범구역 지정 및 운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의 정체성 회복과 골목문화의 가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.
- 전반적으로 제반 사항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근거법규

문화기본법

- 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,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 <신설 2025. 1. 31.>
- ②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이를 위한 재원(財源)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 1. 31.>
-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,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,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 1. 31.>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·사회적·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 1. 31.>
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(이하 이 조에서 “문화영향평가”라 한다)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<개정 2025. 1. 31.>
- ⑥ 문화영향평가의 대상,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5. 1. 31.>

지역문화진흥법

-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

-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 12. 26.>
- ③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경우,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<개정 2017. 12. 26.>